



영등포구 도림동 (장미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및 계획결정(안)

2015. 11.

영 등 포 구 (도시계획과)

도 및 등 (상 PUP) 등 기환경관리구역 및 계획결정(안)

Contents

- 01 | 상정사유 및 추진경위
- 02 | 주거환경관리구역 및 계획결정(안)
- 03 |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 조치계획
- 04 | 우리 구 검토의견

Ⅰ. 상정사유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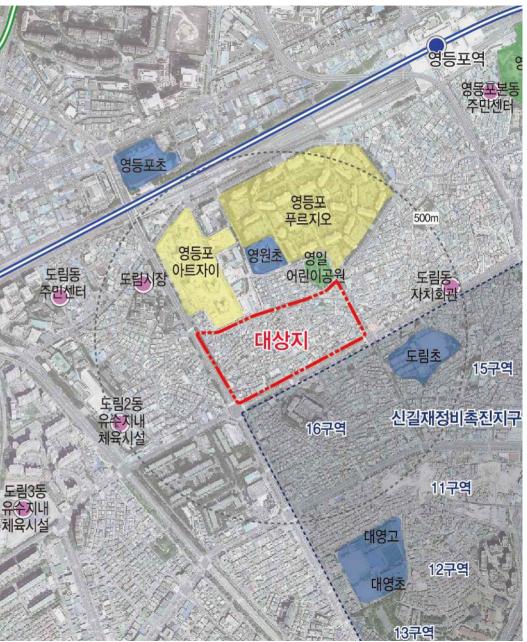
대상지 개요 및 상정 사유

■ 상정사유

-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가로경관 개선 및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구분위치영등포구 도림동 152-76번지 일대면적70,519㎡용도지역2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7층)

■ 위치도



추진경위

2014. 08. 26.	• 대상지 선정 (용역비 258,819천원 시비 배정)
2014. 12. 04.	• 용역 착수보고
2015. 01. 23.	• 대상지 사업 설명회
2014. 12. 09.~ 2015. 09. 09.	• 주민 워크숍 개최(총 23회)
2015. 05 .21.	• 영등포구 중간보고(1차)
2015. 06. 30.	• 범죄예방설계(CPTED) 자문(현장)
2015. 07. 21.	• 서울시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회의
2015. 07. 13. ~ 07. 29.	• 관련부서 사전협의
2015. 08. 13.	• 도림동 주민 확대워크숍
2015. 09. 18	• 영등포구 중간보고(2차)
2015, 10, 05	• 주민설명회
2015. 10. 05 ~ 11. 03	•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Ⅱ. 주거환경관리구역 및 계획결정(안)

정비구역 지정도서

■ 정비구역 지정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 치	면 적(m²)
신설	도림동 (장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영등포구 도림동 152-76번지 일대	70,519

■ 구역지정 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과 가로경관 개선 및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물리적 · 사회적 · 경제적 재생을 도모 하고자 주거환경관리 구역으로 지정함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78	DJ 71	C	면 적(㎡)		그서니(%)	ul =
구분	명칭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합계	70,519 <u>.</u> 0	-	70,519.0	100.0	-
주택	소계	57,143,3	-	57,143.3	81.0	-
용지	주택용지	57,143.3	_	57,143.3	81.0	-
정비	소계	8,574.7	-	8,574 <u>.</u> 7	12,2	-
기반 시설	도시계획도로	8,574.7	-	8,574.7	12,2	-
기반	소계	188,0	-	188.0	0.3	-
시설	공공공지	188,0	_	188.0	0,3	2개소
기타	소계	4,613 <u>.</u> 0	-	4,613<u>.</u>0	6,5	-
<i>></i> ⊢	현황도로	4,613.0	-	4,613.0	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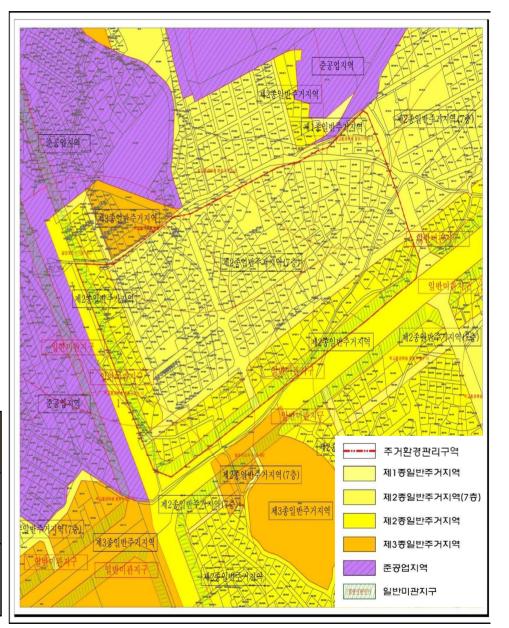
용도지역 계획

■ 용도지역 계획(변경 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TE	기정	기정 변경 변경 후		T-9-1(%)	-1
합 계		70,519.0	-	70,519.0	100.0	
일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9,905.2	-	49,905.2	70.8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613.8	-	20,613.8	29.2	

■ 용도지구(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 적 (㎡)	최초 결정일
기정	-	일반미관지구	양평동로터리 ~신길광장	4,923 (212)	119,207 (2,652)	서고 44호 (2002.2.19)
기정	-	일반미관지구	신길동 102-8 ~대림동785	2,550 (380)	61,200 (4,587)	서고 44호 (2002.2.19)



도시계획시설 계획

■ 도로(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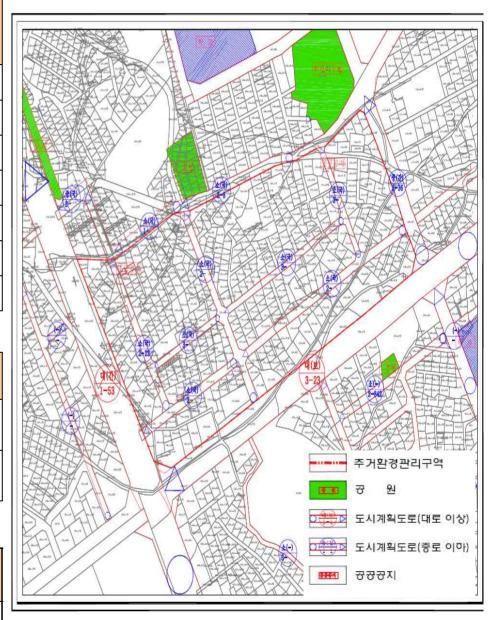
		규	모			여자			사용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형태	결정일
	소로	2	22	8	국지 도로	108	도림 동 152-18	도림 동 154-22	일반 도로	서고 제251호 ('07.07.26)
	소로	2	-	8	국지 도로	196	도림 동 147-54	도림동 1 44 -225	일반 도로	건고 제768호 ('64.01.24)
	소로	2	-	8	국지 도로	136	도림 동 147-74	도림 동 246-46	일반 도로	건고 제768호 ('64.01.24)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241	도림 동 138-15	도림 동 147-82	일반 도로	건고 제768호 ('64.01.24)
	소로	3	-	6	국지 도로	95	도림 동 147-36	도림 동 152-90	일반 도로	건고 제768호 ('64.01.24)
	소로	3	-	6	국지 도로	176	도림 동 137-5	도림 동 141-120	일반 도로	건고 제768호 ('64.01.24)
	소로	3	-	6	국지 도로	104	도림 동 137-20	도림 동 133-11	일반 도로	건고 제768호 ('64.01.24)

■ 공공공지(변경 없음)

7 4	. I tales	시설의	ol=1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일	비고
7174	공공 공지	-	도림 동 136-47	77	-	77	영등포 고시 제2001-42호 ('01.05.18)	-
기정	공공 공지	-	도림 동 154-4외 1필지	111	-	111	영등포 고시 제2006-17호 ('06.03.23)	-

■ 공동이용시설(향후 결정)

7 8	니서이 조크	ola I		면적(m²)	ul ¬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신설	공동 이용시설	미정	-	-	-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 불허용도 계획(의무사항)

도면표시	적용범위	불허용도	비고
А	구역전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허용되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는 불허 학교보건법(제6조, 영 6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제외 	-

■ 건폐율 계획(의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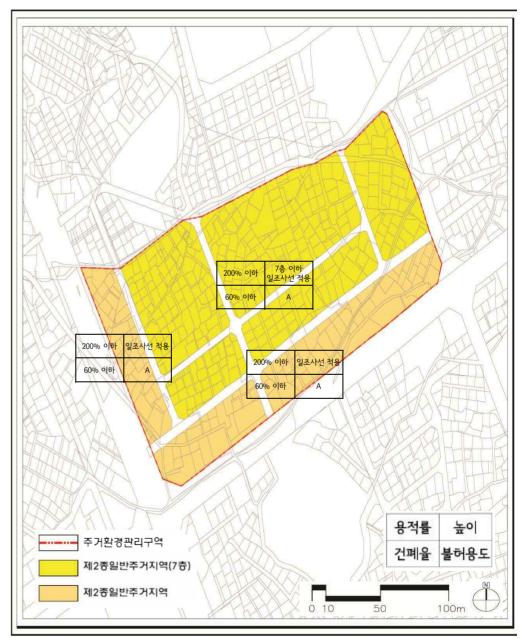
적 용 범위	계획내용	비고
제2 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60%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준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준용

■ 용적율 계획(의무사항)

적 용 범위	계획내용	비고
제2 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0%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서의 용적률) 준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서의 용적률) 준용

■ 높이 계획(의무사항)

적용범위	계획내용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i>7층</i> 이하(최고높이) • 일조사선	• 현행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높이 기준 준용 및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준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조사선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준용



주택의 보전,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 대지안의 조경 계획(의무사항)

구분	적 용 범위	계획내용	비고
의무사항	구역전체	• 대지안의 조경 설치 면적은 200㎡이상의 대지의 경우 조성(건축법 제42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기준 적용)	_

■ 대지안의 공지 계획(의무 및 권장사항)

구분	적 용 범위	계획내용
의무사항		•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 준수(별표4)
권장사항	구역전체	• 주차장 공간에 따라 조성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권장 - 전면조성방식 : 건물 전면에 화단이나 텃밭을 조성하여 자연지반 확보 - 측면조성방식 : 건물 측면 여유공간에 화단이나 텃밭 조성

■ 생태면적률(의무사항)

구분	적 용 범위	계획내용	비고
의무사항	구역전체	• 건축물 신축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율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2008)」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율 적용 (단, 생태면적률 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 따름)	-

주택의 보전,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외관계획(권장사항)

적 용 범위	계 획 내 용
건축물 방향	 건축물의 배치 시 해당가로에 면하여 주출입구 조성 건축물의 방향(건축물 전면 또는 출입구가 위치하는 방향)은 대지의 방향과 일치 건축물 방향을 고려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과 연속성 유지 이웃 건축물과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 확보
건축물 형태	 폭 6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은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하여 개방형 입면 처리, 셔터 설치시 투시형 셔터 사용 기존 노후한 1층부 점포용도의 입면부는 친환경적 소재의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한 통일감 있는 가로 형성 1층부 전면의 입면에 투과율이 낮은 컬러유리, 컬러필름지 등의 설치 지양
건축물 외관 (색채)	 조화로운 마을경관 조성을 위해 채도, 명도가 높은 원색계열의 색채 및 형광색 사용 지양 재료 고유의 특성이 살아있는 자연색 또는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색채가이드라인 중 일반지역의 색채 범위에서 사용 기타 시설물(우편함, 문패 등)은 골목길 단위의 통일된 색채를 적용하여 조화로운 가로분위기 조성
건축물 외관 (지붕)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해 평지붕, 경사지붕으로 조성 평지붕으로 조성할 경우, 지붕면적의 40%이상 옥상녹화 또는 텃밭, 정원 등으로 조성 경사지붕의 경우, 경사도는 3/10 이상, 6/10이하로 조성 및 태양 집광판 설치 권장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과도한 반사성 재료를 지양, 자연재료의 사용 권장 지붕 상부에 설치되는 설비는 디자인이 고려된 차폐시설로 계획
건축물 외관 (외벽)	 외장재는 재료의 내구성・내화성, 관리의 용이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가능한 벽돌, 석재,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과도한 반사성 재료(반사유리 등), 콘크리트 패널, 토속주의 재료(통나무, 흙집, 초가 등) 사용 지양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

■ 공동이용시설 입지검토



구분	위치 및 대지 면적	지목	건	축물현황	특징	매입금액 (만원)	㎡당 금액(만원)
			용도	단독주택			
1	도림동 140-15	대지	규모	건축면적 90.25㎡ 연면적 181.49㎡	구역 내 지역 중심에 위치	117,000	347
	337 m²		층수	2층 / 지1층			
			연도	1977			
2	도림동 138-33 178㎡		용도	단독주택	리모델링 가 능	86,400	485
		대지	규모	건축면적 73.77㎡ 연면적 221.31㎡			
			충수	2층 / 지1층			
			연도	1984			
3			용도	근린생활시설, 주택			
SH SENIO ON VIN	도림 동 138-41	대지	규모	건축면적 80.0㎡ 연면적 240.24㎡	대로변 위치	130,000	610
	213 m²		층수	3 층 / -			
			연도	1995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

■ 공동이용시설 후보지별 비교 검토

구 분		1순위		2순	2 순 위		3 순 위	
		리모델링	신 축	리모델링	신 축	리모델링	신 축	
연 P (n	면 적 n²)	18	1.5	22	1.3	240	0.2	
	매입비	1,1	70	86	64	1,3	800	
소요비 용 (백만원)	공 사 비	526	1,148	642	1,148	697	1,148	
,	합계	1,696	2,318	1,506	2,012	1,997	2,448	
공간	·구성	비효율	효율	효율	효율	비효율	<u>효</u> 율	
활 (용성	상	상	상	중	하	중	
공사	기간	4개월	12개월	4개월	12개월	4개월	12개월	
기타	사항	구조검토, 보강 포함	-	구조검토, 보강 포함	-	구조검토, 보강 포함	-	
선 전 7	성 안		©					

[※] 참고:부지매입비는 2015년 1월 주택공시가격의 1.35배 값 및 주변시세를 감안 산정

- 소요비용, 접근성 및 입지성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필지를 선정안으로 채택
- 공간구성 효율성,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건물의 활용성 및 구조검토&보강 사유로 신축계획이 타당

[※] 참고:공사비적용기준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2015. 2-5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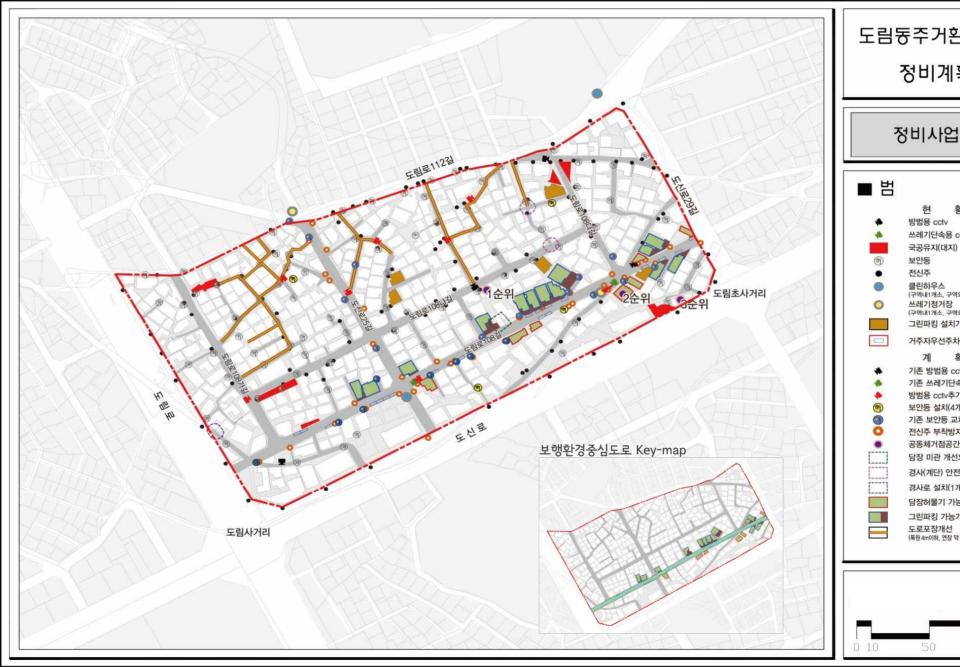
■ 공동이용시설 공간 구성 및 운영 계획

구분	세 부 프로그램	시간	운영내용
옥상텃밭	텃밭 가꾸기	항시	• 옥상 텃밭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도록 도모
마을안전센터	마을안전센터	항시	• 마을 방범 안전센터
주민공예실	공예교육 수공예품 제작	항시	• 창의적 활동 공간
	반찬나 눔	요리 수업 후	• 요리수업 후 잉여반찬을 1인 세대를 위해 나눔 진행
나눔부엌	무료급식	월 1~2회	• 60세 이상 1인 독거세대를 위해 무료급식을 월 1~2회 실시
	다문화 음식체험	분기별 2회이상	• 다문화 가정의 엄마가 본국의 음식을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정도 나누고 서로 더불어 살도록 진행
운영사무실	관리 / 운영	항시	• 전반적인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지하강당	다 목 적실	신청접수	• 어린이 놀이공간, 주민 모임장소(주민회의) • 기타 물리적 공간 제공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구 분		ı	내 용	위 치	공사비 (만원)	비고	
소통하는	공동 이용시설 조성	• 마을 공동체 거점	조성	후보지(3개소) 향후 1개 선정	231,840	매입, 신축 포함	
마 을	국·공유지 환경개선 및 식재이용	• 유휴지로 관리되는	÷ 국·공유지 활용	1개소	300		
	도로포장 개선	• 도로포장(폭원 4m	ŋ ○ 亞ト)	구역 내 (L = 654.3m)	3,900		
	주차·담장	• 그린파킹 설치		13개소	10,400		
쾌적한 마 을	T^l`d`6	• 담장허물기 설치		7개소	1,400		
	가로환경	• 보행환경중심도로	계획	1개구간 (도림로108길)	32,200		
		• 가로환경개선(불법	 광고물부착방지 시트설치	37개소	851		
			ССТУ	• 신규 설치	7개소	5,250	
			CCIV	• 기존 CCTV 교체	방범용 : 4개소 쓰레기단속용 : 2개소	1,200	
안전한	시설물 설치	но⊦⊑	• 신규 설치	4개소	1,000		
마을		보안등	• 기존 보안등 교체	21개소	630		
		• 경사로 설치	• 경사로 설치		90		
		• 경사(계단) 안전바	설치	2개소	285		
		합계			289,346(약28.9억원)		

정비계획 종합도



도림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

정비사업 계획도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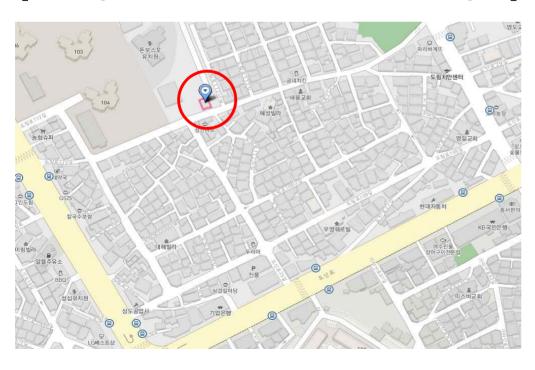
◎주민설명회: 2015. 10. 5.

[주민설명회관련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내 용	비고
조민순	 사업대상지 북측 도림동 144-27번지 "도리미"소공원 및 주변도로에 클린하우스 설치 도림로112길 및 도림로 112가길2 CCTV 설치 	 "도리미" 소공원 내 클린하우스 설치는 관련부서인 푸른도시과 협의결과 공원 내 설치는 어려우며, 공원주변 도로의 경우도 도림동 주민센터 와 교통행정과에 협의결과 주민 반대 등으로 반영불가 도림로 112가길 및 112가길2 에는 설치 계획이 있음 	

[도림통 144-27번지 "도리미" 소공원]

[클린하우스 설치 요청 현장 사진]





◎ 공람공고: 2015. 10. 5. ~ 2015. 11. 3.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내 용	비고
고영희 (도림로112길28)	• 112길 통학로 안전 도로정비 요청 • 거점공간 위치 조율 및 거점공간 운영기획안 변경 요청	 도림로 112길 구간은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을 관련부서(교통행정과 등)로 이첩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 의견을 주민협의체에 전달하였고, 주민협의체에서 회의한 결과 도림동 140-15번지(1순위), 도림동 138-33(2순위), 도림동138-41(3순위)로 거점공간 후보지로 변경되었으며 운영프로그램은 마을안전센터, 주민공예실, 나눔부엌 운영안으로 변경되었음을 	미반영
김용현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협의체 위원장	• 주민공동이용시설 후보지를 기존 5순위에서 3순위로 변경 • 운영프로그램을 기존 4개에서 3개로 변경	안내하였음 • 공동이용시설 후보지 변경(5개 →3개 후보지) 및 운영프로그램 변경(4개 →3개)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동이용시설 규모의 가이드 라인(2층 건물, 리모델링)에 준하여 후보지를 변경하였으며, 운영프로그램은 주민협의체 역량에 맞게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조정한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함	반영

◎관련부서 의견: 2015. 10. 5. ~ 2015. 11. 3.

구 분	의 견 요지	조 치 결 과	비고
서 <mark>울</mark> 시	• 확정되지 않은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비용이나 공공 분야 사업비용 삭제	• 정비계획안에서 삭제	반영
주거환경 개선과	•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시 공동체운영회의 역량을 사전에 평가 및 경제적 자립구조 등 실현가능성 검토 • 주민역량 및 운영의 실현성을 고려, 용도별 적정 규모 조성	• 현재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계획안 조정 후 서울시와 재협의 예정	반영
서 <u>울</u> 시 도시계획과	• 이면도로에 설치되는 보안등, CCTV, 쓰레기 공동집하장 등의 위치를 주민협정 사항에 포함하여 사유지를 활용하 는 방안 강구		반영
서 <mark>울</mark> 시 도시관리과	 경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으로, 경관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 대상지 주변 주요 조망점을 구체적으로 선정, 명시하고 조망점에서의 현황사진을 활용하여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경관시뮬레이션 검토 	• 본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은 전면 철거에 의한 개발방식이 아니며, 현재의 현황과 계획 수립 후의 경관적 변경 사항은 없을	

◎관련부서 의견: 2015. 10. 5. ~ 2015. 11. 3.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내 용	비고
	• 도림로108길 일부구간(도림로 336~도림로108길)은 일방 통행 구간으로 기존 차로폭 유지	• 도림로108길은 일방통행 및 기존 차로폭은 그대로 유지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교통행정과	• 도림로108길 보도구간은 주차구획선으로 인한 단절로 보도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차도에서 사고 발생시 보행자 과 실이 발생되므로 개선이 필요함(보차도를 구분한 상태에서 는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보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차도에서 사고 발생시 보행자 과실이 발생됨)	• 도림로108길은 구역 내에서 차량 및 보행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로서 차량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환경중심도로 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기존대로 유지하였음	반영
	• 그린파킹사업의 목적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있는바, 그린 파킹 대상가구 선정 시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가구 선정	• 담장허물기 및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그린파킹사업 (13개소)을 계획하였음	반영
주차문화과	(담장허물기만 시행하는 가구 선정 지양)	• 담장허물기(7개소)만으로도 골목의 시인성과 개방감을 증진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본 사업에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였음	부분반영
7-11 (2.212)	•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설치한 주차구획을 유지하는 계획 수립요망	• 기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주차구획은 기존대로 유지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관련부서 의견: 2015. 10. 5. ~ 2015. 11. 3.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내 용	비고
푸른도시과	• 사업 대상지 내 화사랑 마을마당(도림동 154-4외 1), 안심터 마을마당(도림동136-47)은 지역주민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존치	• 도림동 154-4외 1, 136-47 마을마당은 현행대로 존치하여 계획하겠음	반영
	• 수목이 생육중인 지역은 지역 녹지량 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존	• 현재 수목 생육중인 지역은 보존하겠음	반영
	• 기타사업 추진중 저촉되는 시설(보안등 등)은 별도 협의	• 추후 사업시행에 앞서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도로과	• 협의하신 도로 재포장 계획은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 으므로 해당 토지의 토지주와 별도 협의(토지사용승낙)후 공사 시행하기 바람		
	• 도로정비계획외의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추가로 개선바람	• 보안등은 상시 LED등으로 계획하겠음	
	• 보안등은 보안사각지대, 우범지대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 따라서 센서형 LED사용은 그 목적에 맞지 않음.	•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후 주민의견 수렴 후	반영
	•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하여 보안등 추가 설치여부 검토 바람.		
	• 보안등 신설 및 교체의 제품 성능은 KS 및 고효율 인증을 획한 LED보안등(50W) 제품 사용	• 보안등은 LED보안등으로 변경토록 하겠으며, 제품 성능에 대해서도 반영토록 하겠음	

◎관련부서 의견: 2015. 10. 5. ~ 2015. 11. 3.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내 용	비고
홍보전산과	• 방범CCTV 설치관련 주민동의서 징구 후 최종 설치 장소 선정	• 방범 CCTV설치시 주민 합의 및 동의서 징구 후설치토록 하겠음	반영
	• CCTV 설치관련 실시설계 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호환성 및 연계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요청	• CCTV 설치 관련 실시설계 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호환성 및 연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하겠음	반영
	• 사업대상지 내 기존 CCTV 3개소 성능개선 요청	• 사업대상지 내 기존 방범용 1개소, 쓰레기 단속용 2개소에대해 교체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사업관련 CCTV설치 검토 등	•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후 주민의견 수렴 후 추가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안전치수과	• 주거환경관리사업 실시설계단계에서 사업대상지 내 노후 하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 요청	•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노후하수시설의 지장유무에 대해 사전협의 하겠음	반영
재무과	• 구유지(도림동 152-148, 대지18㎡)를 도림동 152-113 토지소유자와 2015.5.8 매매(매도)계약 체결	• 국·공유지 환경개선 부문에서 도림동 152-148 토지 는 제외하였음	반영

◎관련부서 의견: 2015. 10. 5. ~ 2015. 11. 3.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결 과	비고
서울시 남부교육 지원청	•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세부적 교육환경보호 대책 검토 1) 소음·진동 저감 2) 비산먼지 저감 대책 3) 석면폐기물 처리대책	 본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은 전면 철거에 의한 개발방식이 아니며,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주민참여형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추후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공사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저감 대책 및 석면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겠음 	한

Ⅳ. 우리 구 검토 의견

우리 구 검토 의견

- 도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참여에 의한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금번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임
- 위와 같은 정비계획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서울시에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고시 되면 주민공동이용시설, 방범안전시설, 가로환경개선사업 등을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게 됨.

감사합니다